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85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9.

발 의 자 : 서영교 · 이성윤 · 김승원
김주영 · 최혁진 · 박균택
민병덕 · 한민수 · 김남희
이해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재심청구권자를 “배우자,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”로 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「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3호의 사건(이하 “민간인 집단희생사건”이라 함)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건(이하 “중대 인권침해사건”이라 함)들은 그 특성상 사후에도 조작·은폐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오랜 기간이 걸릴 여지가 크고, 그 결과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때에는 이미 적법한 재심청구권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가 많음.

그렇기에 헌법재판소는 최근 2026. 6. 24.자 결정(헌법재판소 2026. 6. 24.자 2021헌바145, 284, 290[병합] 결정)에서,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경우에도 그 재심청구권자를 ‘배우자, 직계

친족 또는 형제자매'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424조제4호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에 이른 것임.

이에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,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424조제4호).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4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3호·제4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한 사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第424條(再審請求權者)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再審의 請求를 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가 死亡하거나 心神障礙가 있는 境遇에는 그 配偶者, 直系親族 또는 兄弟姊妹 <단서 신설></p>	<p>第424條(再審請求權者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. 다만, 「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3호·제4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한 사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.</p>